국내여비 지급기준(일부 발췌)

구 분	운		임		일 비	숙박비	식 비
一 七	철 도	선 박	항 공	자동차	(1일당)	(1야당)	(1일당)
교 수 부 교 수 5급(부참사) 이상 사무직원	KTX (특실)	2 등 정 액	"	n	₩30,000	₩100,000	₩40,000
조 교 수 전 임 강 사 일 반 직 원	KTX (보통)	"	"	"	₩30,000	₩100,000	₩40,000
조 교 사무보조원 일 용 직	KTX (보통)	"	"	"	₩20,000	₩80,000	₩30,000

- 1. 고속철도 운행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새마을호 요금을 적용한다
- 2. KTX 및 철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속버스(우등) 요금을 적용하다.
- 3. 운임 등이 할인되는 경우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- 4. 도서 및 벽지의 경우에는 실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5.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한다. 다만, **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**에는 연료 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- 6. 워크숍, 세미나, 학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공문 등에서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는 숙박비 금액을 명시하거나 숙박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금액을 선지급하고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참석확인 공문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다.

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

- 산간오지,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
-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・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
-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
- ※ 근거리 지역구분

현행 지역 구분	세부 지역 구분	교통비(원)
인천시내	강화군, 옹진군 및 도서지역 제외한 인천시내	10,000
서울,안양,과천 외	서울,안양,과천,군포,의왕,안산,시흥,광명,부천,김포 外	20,000
수원,분당,일산 외	수원,분당,일산,강화,영종도,화성 外(인천,서울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일원)	25,000

해외여비 지급기준(일부 발췌)

구	분	교 통 비	원 일 비 (1일당)	제 숙박비 (1야당)	비 식 비 (1일당)	비고
교수	가	항공임 2등 운임 실비	\$35	\$220	\$110	가 : 동경,뉴욕, 런던 파리,홍콩, LA,
부참여(3급) 이 상	나	"	\$35	\$160	\$80	파디, 등등, LA, 모스크바, 샌프란
조 교 수 전임강사	가	항공임 3등 운임 실비	\$30	\$200	\$85	시스코, 워싱턴 나 : "가"지역을 제
참사(4급) 이 하	나	n,	\$30	\$150	\$60	외한 지역

- 1.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[---중략---] 감하여 지급하다.
- 2.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은 항공운임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할수 있다.
- 3. "나"지역의 경우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"가"지역의 한도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 기 위해서는 영수증 및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빙을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4. 워크숍, 세미나, 학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공문 등에서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는 숙박비 금액을 명시하거나 숙박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금액을 선지급하고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참석확인 공문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다.